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법률 제18398호, 2021. 11. 18. 시행)에서 구속사유 고지 등 사전 청문절차와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함에 따라 형사소송규칙에 영상재판의 실시 및 절차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구속사유의 고지 등 사전 청문절차와 증인신문의 실시 및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영상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조항을 준용함(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제84조의5제2항)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통역과 번역에도 준용함(안 제90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

치를 이용한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실시 방법을 정함(안 제123조의
13 신설)

3.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의 고지)

①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한 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②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제123조의13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제84조의4제1항 중 “법 제16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16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123조의13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4조의6제1항 중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한다.

제84조의7의 제목 중 “증언실”을 “중계시설”로 하고, 제1항 중 “증언실”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원 직원”을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증언실에서 중계장치”를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4조의8제1항 중 “법 제165조의2”를 “법 제16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의9의 제목 “차폐시설”을 “차폐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165조의2”를 “법 제165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장의 제목 “감정”을 “감정 등”으로 한다.

제90조 중 “감정”을 “감정, 통역과 번역”으로 한다.

제123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① 법 제266조의17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기일(이하 “영상공판준비기일”이라 한다)은 검사, 변호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통신불량, 소음, 서류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 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다.
- ⑧ 영상공판준비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4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① 법원은 제84조의4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언실은 법원 내에

-----.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실시) 제123조의13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①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84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①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1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4조의5에 정한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② 법원은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① --
-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의7(중계시설의 동석 등)

① -----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② ---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비디오 등 중계장치-----
할 수 있다.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①
법 제165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
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
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
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
다.

② (생략)

제84조의9(차폐시설) 법원은 법
제165조의2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장 감정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①
법 제165조의2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의9(차폐시설 등) ① ---
법 제165조의2제1항-----

②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
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
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장 감정 등

제90조(준용규정) 제12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에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90조(준용규정) -----

----- 감정, 통역과 번역 -----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① 법제266조의17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기일(이하 “영상공판준비기일”이라 한다)은 검사, 변호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통신불량, 소음, 서류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⑧ 영상공판준비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
| 연락처 | (02) 3480 - 1930 |